

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18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법제처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 적용 조문정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적용조문 정비(안 제2조)
- 법제처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에 따른 상위법령 적용(안 제4조)
-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안 제9조)
- 용어 정비(안 제8조, 제12조, 제13조)

□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5. 10. 20(화) ~ 11. 9.(월) 20일간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, 54조

□ 현행조례 : 붙임4

□ 최초방침문 : 붙임5

붙임1 [개정조례안]

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16조제1항제11호”를 “제52조제1항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”를 “제5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9인”을 “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15년”을 “2020년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각각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하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여성가족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과장 정 송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아동지원계장 이 영 옥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예 정 (행정 2309)

불임2 [신·구조문대조표]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.</p>	<p>-----</p> <p>④ ----- 한 차례만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⑤ ----- 1명 ----- -----</p>
<p>제9조(존속기한 등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 <개정 2014.11.25.></p>	<p>제9조(존속기한 등) ----- -- <u>2020</u> ----- -----</p>
<p>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 ---</p>
<p>제13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<u>아니한다</u>.</p>	<p>제13조(수당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아니하다</u></p>